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126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성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4,370,9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4,370,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김보라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전남 신안군 C 전 2644㎡
2. 전남 신안군 D 전 1653㎡.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지방세의 부과, 수납 및 징수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고, 소외 B(이하 '채납자'라고 합니다)는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등을 채납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는 채납자의 자녀입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원고의 채납자에 대한 채권

원고는 채납자에 대하여 금 24,370,990원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납자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부터 채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납액은 위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나.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증여

먼저 채납자는 자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 건물을 2018. 4. 25. 소외 G에게 금 11억 6,500만원에 매도하였고 2018. 6.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갑 제2호증 참조), 위 건물의 매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가 자신에게 부과될 것을 채납자는 인정한 상태에서 2018. 6. 21. 자신의 나머지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합니다)하고 다음 날인 2018. 6. 22.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수 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각 참조).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E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2018. 6. 29.)이 비록 이 사건 증여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에 앞서 위 E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2018. 4. 25.)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위 판결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납자에 대한 원고의 지방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었고, 해당 법률관계에 터잡은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역시 존재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지방세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채납자에 대한 원고의 지방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채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증여 당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 4187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채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채납자의 자녀인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납자가 처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 없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로 인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채납자에게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채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상에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구체적으로 2020. 9. 3. 금 32,000,000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접수 제329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추가로 2020. 10. 13. 금 55,900,000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접수 제373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 대신에 그 가액 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4. 결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채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금 24,370,9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금 24,370,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